

# 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	페이지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총무과	1
2.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총무과	5

( 2014. 2. 26 )

**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**  
**[ 전문위원 이 진 표 ]**

## **1. 안 건 명**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일부 개정조례안

## **2. 제출일자 및 제출자**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2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## **3. 의안 회부일자**

가. 2014년 2월 19일

나. 의안번호 : 14-9

## **4. 관련근거**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

나.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8조(한시 기구의 설치운영), 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, 제21조(한시 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)

## 5. 개정이유

- 가. 도서관 및 교육센터 건립사업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기구 확대 및 증원필요
- 나. 대외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담당조직 격상 필요
- 다. 주민숙원사업의 조기목표 달성을 위한 견인동력 필요

## 6. 주요내용

- 가. 구본청 주민생활국에 “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추진단”을 신설(안 제3조의2)
- 나. 신설 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4년4월1일부터 2016년12월31일 까지로 함(안 부칙 제2조)

### [ 검토결과 ]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 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·운용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T/F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“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”이 그간 자문단 위촉 및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향후 토론회 및 건립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개최,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, 건축설계 공모·착공 등 추진 업무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

- 현재 임시기구(T/F팀)의 지위와 구성인원으로서는 건축설계 및 착공, 다양한 여론수렴 등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또한, 중앙정부기관, 서울시, 교육기관, 한국중부발전(주), 서울화력본부 등 대외 유관 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정식기구로 격상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어
- 안 제3조의2(한시기구)를 신설하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생활국에 한시적으로 마포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을 두고, 안 부칙 제2조에 기구의 존속기간은 2014년 4월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와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, 제8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, 제21조(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)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및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 관 계 법령

## [ 지방자치법 ]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  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[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정 ]

제8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 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 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  
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  
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  
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 
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자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.

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이나 실·과·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제21조(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)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(장과 보조·보좌기관을 포함한다)의 직급이 시·도에서는 3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, 시·군·구에서는 5급 이상(제13조제1항에 따라 실·국을 둘 수 있는 시·군·구는 4급 이상을 말한다)인 경우에는 미리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와 협의하여야 한다.

## **1. 안 건 명**

가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

## **2. 제출일자 및 제출자**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2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## **3. 의안 회부일자**

가. 2014년 2월 19일

나. 의안번호 : 14-10

## **4. 관련근거**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
나.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  
(정원의 관리)부터 제30조(정원의 규정)까지

다.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인력 운영 개선대책 통보(서울특별시 조직 담당관-4090, 2013.04.05.)

라.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배치안내  
(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-4090, 2013.12.10.)

마.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 확충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 
(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-96, 2014.01.09.)

## 5. 개정이유

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및 세무인력을 확충하는 등 정부시책에 따라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여 대민행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.

## 6. 주요내용

- 가. 마포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“1,274명”에서 “1,300명”으로 하고, 집행기관의 정원을 “1,245명”에서 “1,271명”으로 증원(안 제2조)

< 증원내역 >

구분	총계	사회복지인력		세무인력 (소득세전환)	안전 인력	주요현안사업			비고
		연차적 순증	맞춤형 복지			행정	토목	건축	
인원	26	3	5	5	1	10	1	1	

- 나. 증원되는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 중 “5급” 1명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함(안 부칙 제2조)

## [ 검토결과 ]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.12.31 안전행정부에서 통보된 「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」와 「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인력 운영 개선대책」, 「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확충 계획」 등 정부시책에 의거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및 세무인력 등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여 대민행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,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구의 인건비 편성액은 안전행정부에서 책정한 2014년도 마포구 총액인건비 1,045억 7,895만 5천원 대비 91.48%인 956억 7,568만 3천원으로, 8.52%에 해당하는 89억 327만 2천원내에서 증원이 가능함.
- 이에 따라 기준인력 대비 부족한 13명을 최근 신설되었거나 신설 예정 중인 팀에 대한 정원으로 증원하고,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8명,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직 5명을 증원 하는 등 총 26명을 증원함으로서 마포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현 1,274명에서 1,30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,245명에서 1,271명으로 조정하며,

- 증원되는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 중 “5급” 1명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(안 부칙 제2조),
-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과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예고와 우리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며, 인력증원에 따른 예산도 총액인건비에 전액 확보되어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 관 계 법령

## [ 지방자치법 ]

- 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- ④ ~ ⑥ 생략

## [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]

- 제24조(정원의 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<개정 2008.2.29, 2008.7.3>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시·도지사는 그 조사·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, 기관별, 직급별,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- ③ ~ ⑤ 생략

**제28조(한시정원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.
-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(相計) 조정할 수 없다.
-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자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.

**제29조(직급별 정원)**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 체계를 이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, 2008.7.3>

**제30조(정원의 규정)**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2. 본청 · 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 · 도의 5급 이하(시 · 군 · 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

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 
<개정 2008.7.3>

-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급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- ⑤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